

# 「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」 주요 Q & A

2017. 11. 29.

관계기관 합동

## 목 차

- 1. 필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? ..... 1
- 2.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원 규모는? ..... 1
- 3. '빛은 버티면 된다'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는? ..... 2
- 4. 기준을 10년이상 & 1천만원이하로 한 이유는? ..... 2
- 5. 10년 이상 & 1천만원 이하의 구체적 기준은? ..... 3
- 6. 상환능력 판단기준을 중위소득 60%로 설정한 이유는? .... 4
- 7.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신청률 제고 방안은? ..... 5
- 8. 금융회사 등이 매각 거부 하는 경우는? ..... 5
- 9.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이 있는지? ..... 6
- 10.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중 실제 지원대상 예상규모는? ..... 6

### Q1. 필요 자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?

- 정부 예산 투입은 없으며,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임
  -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 소요예산은 없음
  - 금융회사, 대부업체 등 민간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비용은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·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
- ※ 국민행복기금 보유 약정채권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회사들에게 자율적인 기부에 대해 협조 요청하였음

### Q2.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원 규모는?

- 현재로서는 필요한 자원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움
- 채무자 본인의 신청여부,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채권의 매입이 결정되므로 매입채권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고,
- 매입자원 마련을 위한 기부 참여여부, 기부 금액 등도 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 상황임

### Q3. '빛은 버티면 된다'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는?

-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의 기본 원칙은 “빛은 상환능력에 따라 갚아나간다”이며, 금번 대책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음
- 우선, 지원 대상자를 생계형 “소액”, “장기” 연체자로 제한하여 도덕적 해이 논란을 사전적으로 최소화하고,
-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“상환능력이 없는” 채무자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 예정
- 어떠한 경우에도 (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간 비교시) 성실상환자가 보다 더 큰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였음

### Q4. 기준을 10년 이상 & 원금 1천만원 이하로 한 이유는?

- 그간 국회, 언론 등의 논의 과정에서 ‘연체 10년 이상 & 원금 1천만원 이하’는 “소액의 연체로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은 채무자”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
- “연체 10년”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, 신청원 연체정보 등록 해제기간인 7년을 넘어, 민사채권 소멸시효(10년)에 이른 점,
- “원금 1천만원”은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의 평균 채무원금 수준(1,094만원) 등을 고려하였음

**Q5. 연체 10년 이상 & 1천만원 이하의 구체적 기준은?**

□ '17. 10. 31일 기준, 다음의 ①연체기간 및 ②연체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채무자를 지원대상으로 함

① (연체기간) 원 채권기관에서의 연체 발생시점이 '07. 10. 31일 이전으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

② (연체금액) '17. 10. 31일 기준 채무 원금(이자·연체이자, 가지급금 제외)의 잔액이 1천만원 이하인 채권

\* (해당 사례)

- ① 원금 300만원의 채무에 이자 720만원이 붙어 총 원리금 채무액 1,020만원을 미상환한 경우 → 원금잔액은 300만원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
- ② 원금 1,200만원의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50% 원금감면을 받고 '17.10.31일까지 200만원을 상환한 경우 → 원금잔액은 1,000만원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

\* (미해당 사례)

- ① 원금 2,000만원의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통해 50% 원금감면을 받고 '17.10.31일까지 500만원을 상환한 경우 → 이 경우 원금잔액은 1,500만원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② 원금 1,100만원의 채무에 대해 원리금 일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→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**Q6.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60%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?**

□ 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시 “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인정”하는 기준이,

○ 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%임을 감안하여 설정

※ 법원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, 채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채무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 등으로 인정하고, 채무자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(“가용소득”)을 변제자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 
(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(재판예규) 제7조)

< 2017년 기준 중위소득 (복지부 고시 2016-127호)>

(단위 : 원/월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중위소득	1,652,931	2,814,449	3,640,915	4,467,380	5,293,845	6,120,311	6,946,776
중위소득 × 60%	991,759	1,688,669	2,184,549	2,680,428	3,176,307	3,672,187	4,168,066

**Q7.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신청을 제고 방안은?**

-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주소불명 채무자가 많아, 신청접수를 시작해도 신청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음
- 채무자가 지원대책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
  - TV·라디오,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,
  - 지자체, 민간 시민·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
- 특히, 신청 접수시에는 생업 등으로 바쁜 서민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, 접수창구의 야간·주말운영 등 다양한 방식 활용 예정

**Q8. 채무자가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등이 채권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?**

- 대부업자 규제 강화, 부실채권의 추심·매각 규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앞으로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토록 하여 매각을 유도할 계획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·파산 등으로의 연계를 지원\*할 예정

\* 무료 법률서비스(서류준비 및 신청) 제공, 인지대·송달료 등 소요비용 지원

**Q9.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이 있는지?**

< 국민행복기금 內 신청 후 탈락자 >

-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\*,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능력에 맞추어 상환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
  - \* 중위소득의 60% 초과 또는 회수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 등
- 채무자의 재산, 연령·소득·연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90%까지 원금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< 국민행복기금 外 신청 후 탈락자 >

- 필요시, 신복위 개인워크아웃, 법원 개인 회생·파산 등으로 연계를 통해 추심 부담 완화 등을 지원

**Q10.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중 실제 지원 예상규모는?**

- 실제 지원 예상규모를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
  - 실제 추심중단 및 채권소각 대상이 되는 채무자 규모는 본인 신청여부,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,
  - 현재 지원 예상규모를 산출하여 공개할 경우, 향후 대부업체 등의 채권 매입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
-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내년 초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개시한 후, 신청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